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개정된 수련 시설 사용료 기준을 현재 물가 변동을 반영·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신설(안 별표 1~4)

- 명칭과 위치, 휴관일, 사용 시간, 시설 사용료 신설

나. 구미시 청소년문화의집 평일 운영시간 조정(안 별표3)

- (기존) 11:00 ~ 20:00, (변경) 10:00 ~ 20:00

다. 선산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조정(안 별표4)

- 생활관 식비 1,000원/1식 인상, 시설이용료 500원 인상(물가반영)

라. 해평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조정(안 별표4)

- 생활관 식비 1,000원/1식 인상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의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란 다음에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2017
---	--------------	------------------

별표 2의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란 다음에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매주 월요일(신규)	법정공휴일은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	------------	-----------------------------------

별표 3의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평일란 중 “11:00~20:00”을 “10:00~20:00”로 하고,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란 다음에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10:00~20:00 ※월요일 제외	09:00~18:00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	------------------------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미시장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장동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고
1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구미시 선산읍 단계동길 270	
2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상모동)	
3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	구미시 해평면 해평4길 12	
4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2017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휴관일(제6조 관련)

시 설 명	휴관일	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	법정공휴일은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수영장	매주 일요일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매주 월요일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	-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매주 월요일(신설)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시간(제6조 관련)

시 설 명	평일	토, 일 공휴일	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09:00~21:00	09:00~18:00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10:00~20:00 ※월요일 제외	09:00~18:00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	09:00~18:00	09:00~18:00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10:00~20:00 ※월요일 제외	09:00~18:00	

시 설 명	평일	토요일,공휴일	비고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	06:00~21:00	09:00~18:00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4]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개정>

☐ 생활관 사용료

- 숙박형 프로그램 이용단체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 (1인1박)	식 비 (1박3식)	시설이용비 (1인1박)	수련활동비 (1인1박)	합 계	비고
청소년 이하	4,000	15,000	3,000	2,000	24,000	당일 11:00 ~ 익일 10:00
일반인 (인솔자)	5,000	18,000			23,000	

※ 인솔자의 시설 이용비 및 수련활동비 면제.

※ 숙박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숙박 이용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일반단체

(단위 : 원)

구 분	숙박비 (1인1박)	식 비 (1박3식)	시설이용비 (1인1박)	수련활동비 (1인1박)	합 계	비고
청소년 이하	4,000	15,000	3,000		22,000	당일 11:00 ~익일 10:00
일반인	5,000	18,000	3,000		26,000	

※ 입소 전 협의된 시설만 이용 가능함.

※ 교육(수련활동, 워크숍, 세미나 등)을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함.

- OT, MT, 야유회, 관광 등 유희·숙박 목적 사용 제한.

※ 단체기준 : 30명 이상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 반	
강 당	1회(2시간)	무료	30,000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체 육 관	1회(2시간)	무료	30,000	
명 료 관	1회(2시간)	무료	20,000	
강의실(대)	1회(2시간)	무료	20,000	
강의실(소)	1회(2시간)	무료	1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음악연습실	1회(2시간)	무료		
댄스연습실	1회(2시간)	무료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노래연습실	1회(2시간)	무료		
골프체험관	1회(2시간)	무료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비명		기 준	금 액	비 고
피아노		1회(2시간)	5,000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빔 프로젝트		1회(2시간)	10,000	
조명시설 (무대조명)	강 당	1회(2시간)	10,000	
	체 육 관	1회(2시간)	10,000	
음향시설		1회(2시간)	1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냉 · 난방	강 당	시간당	10,000	
	체 육 관	시간당	10,000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명 료 관	시간당	3,000	
	강 의 실	시간당	3,000	

□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청소년 이하	일반	
강좌(프로그램) 이용료	1명/1회	0 ~ 20,000	10,000 ~ 40,000	○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강좌(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1회는 강좌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까지임.

※ 재료비는 강좌(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수영장 사용료

(단위 : 원)

운영일	이용요금			비고
월 ~ 금(강습) 토 · 공휴일(자유이용)	월정기권	성 인	60,000	
		청 소 년	50,000	
		어린이/경로	42,000	
	1일 이용 (당일에 한함)	성 인	3,500	
		청 소 년	3,000	
		어린이/경로	2,500	
	1일 이용 (30명 이상 단체)	성 인	3,000	
		청 소 년	2,500	
		어린이/경로	2,000	

※ 월 회원중 10~55세까지의 여성은 월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적용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월의 사용 가능일 중 3일을 공제한다.

<용어의 정의> 수영장에 한한다.

- 어린이 :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교생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또는 중 · 고등학교생, 대학생
- 성 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경 로 : 65세 이상인 자
- 단 체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2. 구미시 청소년문화의 집

☐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강의실	1회(2시간)	20,000원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3. 구미시 해평청소년수련원 <개정>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주차장 (야영장)	승용 13인승 미만 승합 1.5톤 미만 화물	1대	1,000	체류 1박마다 500원 추가징수	
	13인승 이상 승합 1.5톤 이상 화물	1대	1,500		
강당	평일	시간당	10,000	냉난방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포함	
	토·일·공휴일	시간당	11,000		
생활관	숙박비	청소년	1인/1박	4,000	당일 12:00 ~익일 12:00
		일반	1인/1박	5,000	
	식비	청소년	1인/1식	5,000	
		일반	1인/1식	6,000	

※ 야영장 사용과 관련, 전기·수도·쓰레기 처리비, 텐트 대여료 등
야영장 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자체 규정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 숙박 이용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수련활동비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프로그램 이용료	1명/1회	청소년 이하	30,000원 이내	○ 프로그램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1회는 단위행사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임.
		일반	50,000원 이내	

4. 구미시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신설>

□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 반	
체력단련실 (127.67㎡)	1회(2시간)	무료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모든 시설은 청소년 우선 사용 일반인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 오전 시간만 이용 가능 (주말, 평일 오후 청소년 전용)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10,000원 - 100㎡ 이하 : 20,000원 - 200㎡ 이하 : 30,000원 - 300㎡ 이하 : 40,000원 - 300㎡ 초과 : 50,000원
음악연습실 (107.67㎡)	1회(2시간)	무료	30,000	
노래연습실 (97㎡)	1회(2시간)	무료	20,000	
댄스연습실1 (95.2㎡)	1회(2시간)	무료	20,000	
댄스연습실2 (113.76㎡)	1회(2시간)	무료	30,000	
북카페 (178.51㎡)	1회(2시간)	음료수 구입비		
다목적강당 (331.80㎡)	1회(2시간)	무료	50,000	
분임회의실1 (17.16㎡)	1회(2시간)	무료	10,000	
분임회의실2 (16.12㎡)	1회(2시간)	무료	10,000	
동아리실1 (35.28㎡)	1회(2시간)	무료	10,000	
동아리실2 (31.68㎡)	1회(2시간)	무료	10,000	
독 서 실 (110.11㎡)	1회(2시간)	무료		
직업체험실1 (66.96㎡)	1회(2시간)	무료	20,000	
직업체험실2 (64.80㎡)	1회(2시간)	무료	20,000	
전산교육장 (69.64㎡)	1회(2시간)	무료	무료	
미디어카페 (69.75㎡)	1회(2시간)	무료	20,000	
휴게실 (33.28㎡)	1회(2시간)	무료	무료	

※ 청소년시설 사용 시 사전 예약에 의함

□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설비명		기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일반	
피아노		1회(2시간)	무료	5,000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빔 프로젝트		1회(2시간)	무료	10,000	
조명시설 (무대조명)	강 당	1회(2시간)	무료	10,000	
음향시설		1회(2시간)	무료	10,000	
냉 · 난방	분임회의실 동아리실 (50㎡ 이하)	시간당	무료	3,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토요일,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30% 가산 ○ 시설 사용료 1회 부과 기준 - 50㎡ 이하 : 3,000원 - 100㎡ 이하 : 5,000원 - 200㎡ 이하 : 10,000원 - 300㎡ 이하 : 15,000원 - 300㎡ 초과 : 20,000원
	직업체험실 노래연습실 미디어카페 댄스연습실1 (100㎡ 이하)	시간당	무료	5,000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2 (200㎡ 이하)	시간당	무료	10,000	
	다목적강당 (300㎡ 이상)	시간당	무료	20,000	

□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비 고
		청소년 이하	일반	
강좌(프로그램) 이용료	1명/1회	0 ~ 30,000	10,000 ~ 50,000	○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강좌(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1회는 강좌 시작부터 끝나는 기간까지임.

※ 재료비는 강좌(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프로그램에 따라 수강 기간(1일~1개월)이 달라질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 「구미시 공유재산관 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 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 ----- ----- ----- -----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수수료 등) ① 생략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 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 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

치·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입 안 자	과 장	현 명 숙
	담 당	강 진 선
	담 당 자	이 현 정 (480-2723)